

산업보건과 REACH제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소장
양 정 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0만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약 4만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화학물질관리에 있어서 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로 이원화하여 관리해 왔다.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작업인데,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이 의무를 부과할 시행 의무자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편의상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평가는 뒤로 미루고, 평가의무 부과 주체가 비교적 명확한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최초 제조자나 수입자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여 관리하였다. 그러나 보니 오히려 대량생산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정보가 미국의 경우 22%, 유럽연합의 경우 14%만 확보되는 등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유해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에서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입증 의무를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for chemicals)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길고 지루한 논쟁 끝에 2006년 12월 최종 수정안이 의회의 승인을 얻었으며, 2007년 6월 유럽연합 화학물질관리청(ECA, European Chemical Agency)의 기능이 발족되면 2008 이후 REACH 시스템이 본격 가동될 것이다.

REACH제도는 화학물질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REACH제도 시행의 목적은

첫째, 화학물질 정보 부족으로 안전·건강 및 환경관리가 어려워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이고(유해위험성의 정보 등 화학물질의 안전성의 입증 의무를 제조·수입자에게 부과), 둘째로 화학물질의 이동 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하부사용자에게 정확한 유해위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 유해성 평가가 완료된 물질은 1,000종이 넘지 않았지만 REACH제도가 시행되면 단기간(2012~2018년)에 1만종 이상의 물질에 대한 유해성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 화학물질관리청(ECA)에서는 확보된 유해성 정보의 중복시험을 방지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가 공급됨으로 인하여 각국 정부의 노출기준 설정, 관리대상물질 설정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정해진 용도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물질(약 1,000 여종으로 예상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용제한, 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에서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제도에 우리가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각국의 화학물질관리제도는 범지구적으로 통합추세에 있으므로 유럽연합의 REACH제도는 필연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럽 이외 국가의 화학물질 관리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REACH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인하여 앞으로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생산과 관리의 주도권을 유럽연합이 쥐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각국 정부는 유럽연합의 REACH제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부처별로 REACH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산업보건측면에서 REACH제도는 좋은 소식이며 고마운 제도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서는 이미 REACH제도와 유사한 틀로 (신규)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정보전달(MSDS 제도) 체계를 다루고 있다. 그동안 각 나라별로 다른 형식 및 정보내용의 부실로 인해 정보 제공의 도구로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에 대한 의구심이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유엔에서는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 Labeling of Chemicals)를 도입하여 MSDS의 형식의 통일화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MSDS 내용의 부실에 대한 문제는 REACH제도의 시행으로 해결될 것이다. REACH제도에서는 MSDS를 단순한 정보전달을 위한 도구로써의 기능뿐만 아니라, 공정별 안전한 사용방법을 규정한 노출 시나리오 부속서를 제공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위해성 저감대책의 중심 도구로 MSDS의 기능을 확대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국내 MSDS 제도의 운영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유해위험성 자료의 확보, 화학물질 정보의 확보, 사업장에서의 실질적인 사용조건을 반영한 정보제공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REACH제도는 그 해답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화학물질 관리정책, 위해성 정보의 실질적인 수요자는 직업적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이들의 안전보건을 책임져야 하는 산업안전보건인에게 REACH제도는 국내 화학물질 정보전달 체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벤치마킹의 도구가 될 것이다. ♡